실·무
강·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해설(I)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사무관 | 최 두 선

지난 9월 20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 · 공포되었다.

지난 2006 지방계약법령이 제정 ·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시행령의 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방중소 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 수주격차를 해소하고 어려운 지방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고 할수 있다 .

둘째, 지방계약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다.

지방계약법령이 제정 · 시행된 이래 지방계약의 투명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의무화, 수의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하여 지방계약의 65%이상이 수의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다.

그러나 분할계약의 문제점 등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투명성을 보완하였다.

셋째, 계약의 효율성 확대이다.

지방계약법 제정초기 제도취지가 투명성을 강조하다보니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금액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소액수의계약 절차를 대폭간소화 하였으며, 이외에도 입찰공고 기간단축 등을 통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마지막으로 시공품질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다.

공사에 협상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시공부문에서 적극 활용 되도록

종 전	개 정
제8조 (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였으며,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 · 공모 입찰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시공품질을 높일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조문별로 개정내용과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소액수의계약 G2B 견적입찰 관련 예정가격작성 의무화(제8조제2항)

계약체결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종전규정에는 소액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견적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견적입찰을 진행 할

2.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여 관련 조문정리(제13조제2항)

종 전	개 정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②---------- ---------- ---------- ---------- ----------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수 없으므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소액수의 견적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제도를 정비 하였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합의 입찰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종전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2항 각호에서 '중소기업자 고유생산제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합의 입찰참여가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 참고)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2007. 4. 11)
제8조(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2)
제5조의3(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②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 자신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 2개 이상 존재하는 때에 해당 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용범위 확대 및 의무화(제4조)

종 전	개 정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품질저하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을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문은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 위험 방지를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모두 PQ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을 사전에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

한편, 당초 PQ대상공사는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 200억원이상18개 공종으로 조정하여 기술이 보편화된 공사는 PQ대상공사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서 입찰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PQ 에서 제외된 공종 : 상수도,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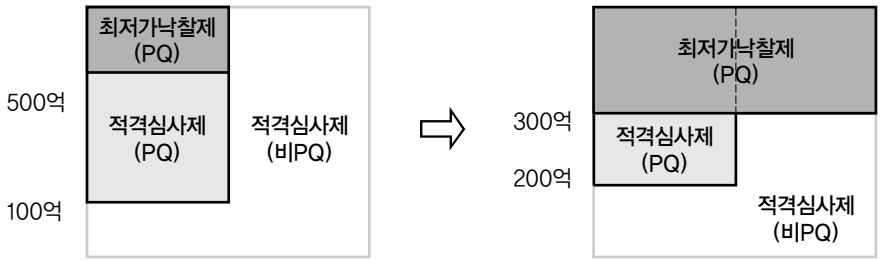

※ PQ공종(18개) ① 기둥사이가 50m이상 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교량건설부분이 200억이상인 경우) ② 공항 건설공사 ③ 댐 축조 건설공사 ④ 에너지 저장시설 공사 ⑤ 간척공사 ⑥ 준설공사 ⑦ 항만공사 ⑧ 철도공사 ⑨ 지하철공사 ⑩ 터널공사가 포함된공사 ⑪ 발전소 건설공사 ⑫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⑬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⑭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 ⑮ 관람 집회시설공사 ⑯ 전시시설공사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4.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 및 내역입찰방법 보완(제15조제2항)

종 전	개 정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위 조문은 그 동안의 물가변동상황을 반영하고, 중소규모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등 입찰자의 불편 해소 및 발주기관의 내역입찰준비 등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 내역입찰 :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는 입찰

이는 입찰업무의 전자화에 따라 입찰 참가자 증가로 내역입찰의 실효성이 경감된 부분에 대하여 내

역입찰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서 입찰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입찰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5. 물량내역서 교부범위 확대(제15조제3항)

종 전	개 정
③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100억원 ----------. 다만, 낙찰자 결정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개정 조문은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토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토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종전에는 추정가격 1억 미만 공사는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없이 설계서만 열람토록 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1억미만 공사의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공사에서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토록 함으로서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한후 입찰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입찰자의 권리와 입찰의 투명성을 보장 토록 한 것이다.

6.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제15조제3항)

종 전	개 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33일	⑤----------. 1. ---------- 7일 2. ---------- -----15일 3. (현행과 같음)

위조문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시 공사계약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만 제출하는 입찰로서 그동안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자가 사무실에서 PC를 통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설명일을 앞당겨도 입찰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게되어 현장 설명일을 앞당겨 입찰진행을 단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공기간을 단축 토록 한 것이다.

7. 최저가 낙찰제도의 보완(제15조제8항)

종 전	개 정
〈신 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 효과를 가진 기술 · 공법 ·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기재한 산출내역서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신기술 · 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종전 내역입찰방식에서 순수내역입찰로 전환하였다.

순수내역 입찰제도란 교부된 설계서(도면, 시방서) 및 입찰자의 기술제안내용(신기술 · 공법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입찰방식으로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며 대상공사는 초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9. 단기계약제도의 보완(제15조제11항)

종 전	개 정
〈신 설〉	⑪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5년도 지방계약법령에서 공사의 단가계약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공사의 단가 입찰시에는 입찰서 제출 및 산출내역서 제출과 관련 입찰자가 총액으로 입찰금액을 표기하되 계약 체결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명문화 함으로써 공사의 내역입찰과 구분하고 용역 · 물품 단가입찰방식과 구분하여 입찰의 혼선을 방지 하고 계약금액 조정 및 사후정산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10. 2단계경쟁 입찰제도 개선(제18조제1항 및 제3항)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청사관리용역, 검침용역, 단순 경비 ·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

종 전	개 정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단순 노무 위주의 용역계약의 경우 최저가 입찰시 최저임금수준에도 미달하는 임금지급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단순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인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배제토록 함으로써 단순노무자들의 권익을 보호 하도록 하였다.

11. 중소기업간 제한기준 마련(제20조제1항제8호)

종 전	개 정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 사항등) ① (생 략) 8.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 사항등) ①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고시한 물품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WTO 정부조달 협정문에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WTO 정부조달협정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이러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은 지역제한과 중복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 참고) 관련 법령 〉

○ WTO 정부조달협정문 한국양허표 부속서 2(지방정부기관)
〈부속서 2에 대한 주석 中〉
3. 이 협정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 및 수의계약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single tendering procurement and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Local Finance Law and its Presidential Decree.

12. 중소기업간 지명기준 마련(제22조)

종 전	개 정
제22조(지명경쟁입찰의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다.	제22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2.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경우	3. ------5천만원----------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대 ·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 임차하는 경우	4. 예정임대 · 임차료의 연액(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5천만원 이하인 당해 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물건의 임대 · 임차 이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5. 제2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9. (생 략)	6.~9. (현행과 같음)
〈신 설〉	10.「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 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 등이 정부조달협정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지명경쟁 대상에서 포함하고, 수의계약금액이 상향조정(3천만원→5천만원)됨에 따라 수의계약과 연동되어 있는 지명경쟁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편, 관용차량의 유류구매, 폐기물처리 용역, 학술연구 용역 등 사업자의 특정한 위치, 사업자의 경험, 능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토록 1억원 이하의 용역이나 물품구매 지명경쟁 대상에 추가함 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13. 수의계약 요건 명확화 및 집행절차 강화(제25조제1의1항)

종 전	개 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 1. (현행과 같음) 1. 의1. 시험문제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에서 시험문제나 비밀문서 등을 인쇄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험문제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자치단체가 행위를 비밀리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 사유를 추가하였다.

14. 특정위치 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대상 추가(제25조제1항제4호 차~타, 하목)

종 전	개 정
4.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4. (현행과 같음)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 시설관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 · 자격을 요하는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 시설관리 · 교육 · 행사 · 정보이용계약 · 의상(의류)구매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타. 특정인의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 설〉	타. ----------임차 하는---
	하.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 사업자의 경험이나 특정자격을 요하는 교육, 행사용역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근거를 마련 하여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 정보이용계약이나 공연에 필요한 특정 디자인의 의류구매는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하였으며 광고입간판 설치 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자치단체 사무수행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이경우에도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확대해석 하여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15.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수의계약대상 추가(제25조제1항제4호 "거" 목)

종 전	개 정
〈신 설〉	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발굴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를 문화재청장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후 신청서에 조사기관 등을 명기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체 변동으로 인한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 등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일이 늦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등을 해소 하고 지표조사 기관이 대부분 발굴(시굴) 조사 기관으로 허가를 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의계약대상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추가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